

의안
번호

4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2. 19.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해숙 의원 외 13명

나. 의안번호 : 제413호

다. 제출일자 : 2025. 2. 3.

라. 회부일자 : 2025. 2. 10

2.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4조)
- 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6. ~ 2025. 2. 1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성북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과, 평화와 인권을 기리는 상징으로 성북구 관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성북구 평화의 소녀상 설치 현황 >

■ 시 설 명 : 성북구 한중 평화의 소녀상

■ 설치일시 : 2015.10.28

■ 설치장소 :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6번출구 인근 분수마루

* (현)창작연극지원센터 부지에 최초 설치하였으나 시설건립공사로 2021. 2.28 현 장소로 이전 설치

■ 설치주체 : 성북평화운동위원회

■ 제작의도

-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가치를 함께 기억하기 위함
- 한국과 중국 소녀상을 통해 전 세계 전쟁 피해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

□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조례의 목적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나.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성북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다. 안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의 사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보호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기념사업 수행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안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를 두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보수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성북구 관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의미가 있고 상위법령 위배사항이 없음.

별첨 1 관계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0호, 2020. 6. 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7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19.]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